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원회기
민원회기 83

제출년월일 : 1999.10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정 이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설해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집행 기관을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 형성을 목표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감사·감정·관리업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자 아니하는 사무로 함(안 제4조 제1항)
- 나.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 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등의 시설과 장비, 기관보유 부동산, 책임등의 부수신력등을 감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심사위원회는 6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되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원개공무원과 당해 분야 전문가로 해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7조)
- 마.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자원에 및 협약위반 시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 바.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3. 세 정 조례(안) : 뒷붙임

4. 참 고 자료 : 뒷붙임

- 가. 행정자치부 표준안 1부
- 나. 경상북도사무의민간위탁 추진및관리조례 1부.
- 다. 관련법령(별첨) 1부.